

수신: 서울시장
참조: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, 도시활성화 과장, 공동주택과장
발신: 잠실5단지 주민회
발신일: 2018년 7월 31일
제목: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전면 변경 요청

인원서류
제출번호: 25303
제출일자: 2018. 8. 1
제출처: 2018. 8. 8
관리처 기록번호
공동주택과

가. 방문민원 제기 사유

현 5단지 정비계획안이 관련법령 검토 미비, 기부채납 오류 및 필수 절차 무시 등 다수의 중대 하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, 도계위 심의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현 정비계획안의 중대한 하자사항

1. 도계위의 국제설계공모의 실시범위는 조합의 요청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월권행위

- 조합 요청: 올림픽로 및 송파대로변 경관디자인 및 한강공원 브릿지, 공원(기반시설)
- 국제설계공모: 건물용도, 면적, 배치와 기능, 동선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설계 및 실시설계

2. 5단지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, 공공발주 지침에 따른 국제설계공모 실시는 무효

- 사유지 소유주이자 발주자인 조합원(조합 포함)에 대한 의견청취라는 중대절차 생략,
- 심사단에 5단지 관계자를 완전 배제, 정량평가 없이 정성평가만으로 완전한 객관성 결여

3. 법정 최대한도를 초과한 기부채납은 법령을 무시한 재산권 강탈 행위

- 관통도로의 보도(2636평/2.43% 추정), 임대주택 대지(3411평/3.14% 추정) 등의 누락
- 기존 16.73%에서 22.31% 이상으로 증가(5단지 법정한도 15.9%, 3종주거 15%, 준주거25%이하)

4. 근거 없는 학교이전 및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조합원총회 상정 없어 무효

- 학습환경 및 통학안전을 현저히 침해하는 학교이전은 학교보건법 위반임
- 학교이전을 위한 막대한 소요예산에 대해 총회 설명회 및 승인절차 없어 무효

5. 단지내 폭 27M의 관통대로 설치계획은 도로법 상의 중대절차 위반

-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단지내 4차선 도로는 교통영향 평가 및 주민 공청회 실시 대상임

다. 주민회 요구사항

- 중대하자를 내포하고 있는 국제설계공모의 백지화 및 도계위 심의를 즉각 중지
- 학교보건법, 도로법, 도정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고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안의 전면 변경
-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박시장님과의 5단지 주민회의 면담 요청

첨부) 조합원 동의서 명부